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664호, 2022. 6. 7.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併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99. ~ 99.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의 “기업성장지원팀장”을 각각 “국토교통과학기술
정책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
략담당관”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및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2,
제8호의8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토교통부문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 분석·전망
3.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회의체 운영 및 추진사항 이행
관리
6. 국토교통부문 산업·고용 최신 동향 점검·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
의·조정

7. 국토교통부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8. 국토교통부문 신성장동력 창출전략 마련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9. 국토교통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10. 국토교통부문 산업 혁신 및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국토교통부문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의 수
립·시행

같은 조 제11항제6호 중 “외자유치”를 “외국자본유치”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성장지원팀장”을 “국토교통과
과학기술정책팀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제
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
발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10.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
 11.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통계관리·국제협력
 12. 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부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4.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과제관리·홍보
 15. 국토교통부문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제12조제6항 중 “공항안전환경과 및 항행시설과를”을 “공항안전환경과·항행시설과 및 공항건설팀을”로 하고, “도심항공정책팀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을 “도심항공정책팀장·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9.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5호 중 “도로포장관리기법·도로절토사면관리기법”을 “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 중 “전자 지불”을 “전자지급결제”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8호 중 “공수비행”을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유상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3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및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을 “4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및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1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을 “19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 8급 3명)”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공항건설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

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별표 4 중 “포항공항출장소”를 “포항경주공항출장소”로 한다.

별표7의2 중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18 중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3제2항 관련”을 “제60조의3제2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8의2를 삭제한다.

별표 20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1조제1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1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기업성장지원팀”을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성장지원팀장”을 각각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으로 하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 같은 조 제21항, 제60조의2, 제61조제12항, 별표18, 별표18의2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항건설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항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기업성장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 -----미래전략담당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미래전략담당관----- ----- -----.
1.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총괄·조정	1.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대외협력	2. 국토교통부문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 분석·전망
2의2. 국토교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삭제>

<u>· 조정</u>	
3.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업 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과제 관리 및 홍보	4.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	5.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회의체 운영 및 추진 사항 이행관리
6.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국토교통부문 산업·고용 최 신 동향 점검·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7.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 대한 통계관리 및 국제협 력	7. 국토교통부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8. 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문 신성장동력 창 출전략 마련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8의2. ~ 8의7. (생 략)	8의2. ~ 8의7. (현행과 같음)
8의8.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 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 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삭 제>
8의9. (생 략)	8의9. (현행과 같음)
9.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	9. 국토교통부문 투자 추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u>항</u>	
10.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토교통부문 산업 혁신 및 추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 구·개선
11.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중· 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부문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및 진흥정 책의 수립·시행
12.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 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14.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 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추진에 관한 사항	
1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 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 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 관에 관한 사항	
⑪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6. -----

<u>외자유치 총괄</u> 7. ~ 9. (생략) ⑫ ~ ⑬ (생략) ⑭ <u>기업성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신설></u>	<u>외국자본유치</u> ----- ----- 7. ~ 9. (현행과 같음) ⑫ ~ ⑬ (현행과 같음) ⑭ <u>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u>----- -----. 1. <u>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2. <u>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 3. <u>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4. <u>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5. <u>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u> 6. <u>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u> 7. <u>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 ~ 6.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u>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u>	8. <u>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u> 9. <u>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사항</u> 10. <u>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u> 11. <u>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통계관리·국제협력</u> 12. <u>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사항</u> 13. <u>국토교통부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u> 14. <u>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과제관리·홍보</u> 15. <u>국토교통부문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u> 16. ~ 21. (현행 1. ~ 6.와 같음)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⑦ ~ ⑳ (생략)
<신설>

⑦ ~ ⑩ (현행과 같음)

⑫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
구·발전
2.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제13조(도로국) ① ~ ⑤ (생략)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도로포장관리기법 · 도로절토사면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 연구 및 발전

6. ~ 12. (생략)

⑦ (생략)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밋 예산 확보

6.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9.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제13조(도로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

6. ~ 1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 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 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9. ----- 전자 지급결제----- -----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협력국) ① ~ ③ (생 략)	제18조(지역협력국)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관인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2. ----- 접수·발송-----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 ② (생 략)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 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다.	③ ----- 총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보존 및 기록 관의 운영·관리	2. ----- 접수·발송-----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④ (생 략)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 가	8. ----- 공수비행(空手飛 行: 유상승객·유상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 다. 이하 같다)-----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보존 및 기록 관의 운영·관리	2. ----- 접수·발송----- -----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u>수발</u> ·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2. ---- <u>접수·발송</u> ----- -----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생 략)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 <u>총괄</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u>수발</u> 및 보존	2. ---- <u>접수·발송</u>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생 략)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	② ----- -----

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u>총괄</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공항출장소) ① (생 략)	제40조(공항출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 <u>총괄</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② (생 략)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 ----- -- <u>총괄</u> ----- -----.
제55조(원장) ① (생 략)	제55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u>총괄</u> ----- -----.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① (생 략)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 ----- <u>총괄</u> ----- --.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u>기업성장지원팀</u> 은 2023 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u>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u> -----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기업성장지원팀장</u> 이 기획조정 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기업성장지원팀장</u> 이 보좌하는 사항은 <u>미래전략일 자리담당관</u> 이 보좌한다.	② ----- <u>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u> ----- ----- ----- ----- ----- <u>국토교통 과학기술정책팀장</u> ----- ----- <u>미래전략담당관</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002	1,003	+1
·	·	·	
·	·	·	
일반직 계	992	993	+1
·	·	·	
·	·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 보·통계주사보·공업주 사보·환경주사보·항공 주사보·시설주사보·전 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사서주사보 또는 방 재안전주사보	8	9	+1
·	·	·	
·	·	·	